

## 간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연구

盧 啓 鉉

---

---

본 논문은 조선과 청 사이에서 간도 영유권을 둘러싼 국경분쟁을 하던 경위를 추구하고 그 진상을 밝힌다. 백두산정계비가 조선과 청 사이의 조약임을 논증하고, 조선과 일본이 맺은 제2차 의정서(을사보호조약) 2조의 적용을 받아 일본은 백두산정계비 비문을 고수해야만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정계비를 무시하고 청과 별도의 조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청에 넘겨 준 간도협약은 2조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이다. 조선과 청의 국가계승권을 갖고 있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진지하게 간도 영유권 문제에 관하여 역사적·경제적·사회적·지리적·정치적·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종합검토한 후에 직접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

### I. 서 언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조선과 청 시대부터 국경분쟁이 지속되어 온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과 청 사이에서 국경분쟁을 하던 경위를 추구하고 그 진

---

본 논문은 2001년 11월 23일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부설 연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효정 이순탁 교수 기념강연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 연변대학교,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한가람APT 219동 402호.

## 2 盧啓鉉

상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압록강 건너편의 만주, 즉 서간도 지역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 간도의 범위

간도의 범위는 일정하지 않다. 가장 넓은 범위로는 백두산에서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둘러싸인 남만주 일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청과 국경분쟁의 대상이 되었을 때 조선측 주장은, 조선인이 개간하고 또한 조선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살던, 즉 지금의 흑산산맥·노아령산맥 이남과 두만강 사이의 지역이었다. 일본이 청과 국경문제를 두고 논쟁하던 지역도 또한 이곳이었다. 이 지역내에는 현재 연길·화룡·왕청·혼춘·안도현 및 돈화현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의 간도는 약 41,000여 Km<sup>2</sup>의 면적을 갖고 있다.

### 2. 빈곤의 동태적 문제에 관한 연구와 방법론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은 1638년에 청 태종이 남반(爛盤, 압록강 하류)에서 봉황성을 거쳐 감양(鹹陽, 홍경과 회인 사이)을 지나 성창문과 왕청에 이르는 곳을 따라 공사를 하고 이를 새로운 경계선이라 하면서 이 신계(新界)는 구계(舊界)보다 50리를 더 밖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하였다.<sup>1)</sup>

조선측 기록인 통문관지(通文館志)에 의하면, “1731년(영조 7)에 봉황성(鳳凰城) 밖에 있는 초하(草河)와 애하(陂河)가 합류하는 지점에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의 서쪽은 청국에 속하고 동쪽은 조선에 속한다.”<sup>2)</sup>라고 한 청국측 자료를 전제하고 있다.

1709년에 청 강희제(康熙帝)의 명을 받아 청국 국경을 조사하고 지도를 작성한 프랑스인 Pere Régis(중국명 雷孝思)의 비망록에 의하면, 두만강 하류의 녹

---

1) 稻葉岩吉 [15] p. 319.

2) 金指南 編 [3], 이 지명들은 현재 만주의 심양(瀋陽)에 가까운 곳들이다.

둔도(鹿屯島)로부터 흑산산맥을 거쳐 장백산과·봉황성에 이르는 곳에 점선을 그어 이를 설명하기를, “봉황성의 동방에는 조선국의 서방국경이 있다. … 지도 위에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 국경선이다.”라고 하고 있다.<sup>3)</sup>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과 청의 기록과 제3국의 기록이 모두 이 당시의 국경선은 봉황성 동쪽에 있는 책문(柵門, 나무를 엮어 일렬로 세워 표시한 경계선)임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과 청 사이에는 이 책문으로부터 두만강 사이 일대의 남만주에 봉금지대(封禁地帶)를 설치하였다. 즉, 이 지역은 청이나 조선으로 보아서 왕업의 기초를 이룬 조상의 성스러운 지역이므로 속인들의 발자취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여 사람들의 내왕 또는 거주를 못하게 한 무인지대(無人地帶) 또는 완충지대로 하여 수백 년 지속되었다.

이 지역을 신성시하는 것은 양국이 공통적이었다. 청은 황실의 조상이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발상하였다는 것이고, 조선은 단군이 이곳에서 나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씨조선 왕실 조상이 모두 이곳에 연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sup>4)</sup>

이 결과 조선과 청 사이의 무인지대는 엄격한 가운데 유지되었으며, 청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한 1867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민간인은 양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에도 불구하고 몰래 이 지역에 들어가서 약초도 캐고 사냥도 하면서 내왕하였다. 양국은 몰래 들어 온 민간인을 발견하면 상대방 정부에 통고하여 그 정부로 하여금 이들을 소환해 가도록 하였다.

### 3. 간도의 개척

이러한 양국 정부의 엄격한 봉금지책(封禁政策, 무인정책 또는 완충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은 끈질기게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곳의 불모지를 일구어 나갔다.

3) 國會圖書館 編 [1] pp. 336~338. 이하에서는 간도영유권관계 발췌문서라고 한다.

4) 欽定盛京通志 [14]. 世宗 때 지은 龍飛御天歌는 李成桂, 즉 太祖의 高祖(穆宗) 때부터 두만강 이북지역과의 연고를 노래하고 있다.

〈표 1〉 간도를 맨 처음 개발한 조선인<sup>5)</sup>

智人社	南營下村	李貴仁
智逸社	回鄕村	崔文吉
東良下里	龍井洞	張仁碩·朴允彥
"	小佛洞	李貴綜
"	土城浦	朴某·玉世英
平岡下里	鶴河	吳昌烈·姜億石 郭永和·金致五
平岡上里	藥水洞	金君若·李春鳳
"	虛乃城	文城玉·張成芳
"	柳亭村	崔禹山
"	二道溝	鄭基禹
"	三道溝	崔瑞川·延基先 金還甲·尹弘烈

청국측 사료(史料)에 의하면 간도 지역을 먼저 개척·개간한 것은 조선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청은 1867년에 길림성 남부의 봉금 지역을 일방적으로 청국인들에게 개방하고, 1881년에 연길(延吉)에 관청을 두고 간도를 개척하려 하였다. 이 때 이미 이곳에는 조선인의 다수가 개간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혼춘지부 이금용(琿春知府 李金鏞)이 청국정부에 조사·보고한 바에 의하면, "... 이미 조선인 수천 명이 2,000상(晌, 1晌은 4~7단보) 이상의 땅을 개간하고 있음을 알았다."<sup>6)</sup>고 한데서 알 수 있다.

〈표 1〉을 보면 간도 북부의 해란하(海蘭河) 지역에서도 조선인이 청국인보다 먼저 개간했음을 알 수 있다.

5) 東洋拓殖株式會社 [16] p. 84.

6) 篠田治策 [17] p. 22.

#### 4. 간도의 인구분포

간도 지방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청 양국이 무인정책을 적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인적이 없었던 곳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은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유입하였다.

조선인이 이곳으로 유입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와 청인보다 많이 들어간 이 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요인이다.

함경도 지방의 토질이 척박한데 반하여 간도 지방은 토지가 비옥한 점이다. 이 때는 농업을 위주로 한 시대였기 때문에 농토의 비옥함은 사람이 사는데 필수요건이었다. 이 당시(1860년대) 함경도에는 몇 해에 걸친 가뭄으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여 굶어 죽는 자가 다수였다는 점도 함께 작용하였다. 간도 지방의 농산물 수확고가 함경도 지방에 비하여 3배나 되었기 때문에 함경도 지방의 조선인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찾아들어 간 것이다.

또한 자연산의 산삼이 백두산 지역에 자라고 있었고, 이것이 고가로 거래된 점도 사람을 유인한 점이었다. 그리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산림지대에는 각종 짐승이 서식하고 있었으므로 수렵의 대상이었음이 또한 사람을 유인하였다.

둘째, 지리적 요인이다.

간도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연결하고 있다. 두만강 자체가 역사상 국경하천으로 작용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걸쳐 사는 사람(조선족이거나 여진족 또는 漢族)은 누구 할 것 없이 이 두만강을 국내하천 넘나들 듯이 왕래하였으므로 두만강을 건널 때 다른 나라로 간다는 의식 없이 자연스러웠다.

더구나 두만강은 물이 많이 흐르는 여름철에는 뗏목을 이용하고, 추운 겨울철에는 얼음판을 이용하여 쉽게 넘나들었다. 반면에 청은 태평령산맥·흑산산맥·노야령산맥 등 간도를 둘러싸고 있는 고산준령을 넘어야만 간도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간도에 들어가는 데는 난관이 많았다.

셋째, 정치적 요인이다.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고 여러 가지 압정을 하니 이를 피하여 가는 사람, 독립투쟁을 위하여 가는 사람들이 많아 간도 지방에 조선인이 집결되었는데 이것

〈표 2〉 20세기 들어와서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과 청국인

구분	연도	1910년				1917년	
		인구	호구	조선인	청인	조선인	청인
조선인	인구	71,000	109,500	161,600	183,496	195,611	
	호구	14,200	21,100	31,200	34,917	36,890	
청국인	인구	23,500	33,500	36,900	43,896	48,466	
	호구	3,300	4,570	5,100	7,177	8,514	
%	조선인	67	69.5	77.2	76.1	75.3	
	청인	33	30.5	22.8	23.9	24.7	

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이상의 요인등으로 간도에 조선인이 많이 이주해 갔는데 그 숫자는 확실하지 않으나 다음 기록들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청의 자료에 의하면 “1896년에 간도 지역에 조선인이 4,308호에 2만 899인이 살고 있으며, 만주 전역에 걸쳐서는 4만 인이나 되었다.”<sup>7)</sup>고 하고 있다.

조선측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함경도 관찰사 조준우는 1895년에 간도지방을 조사하여 정부에 보고한 글 가운데 이 지방 거주자의 상황을 기록하기를, “... 우리 백성이 이 지방으로 이주한 자가 이미 수만 호를 넘었으며 모두 청인의 압박을 받고 있고, 청인은 조선인의 100분의 1도 아니 된다.”<sup>8)</sup>라고 하고 있다.

또 1897년에 경원군수 박일현이 간도 지방을 조사하여 정부에 보고한 가운데, “간도지방에 사는 우리 국민은 무려 몇 십만 호가 되며, 이 간도 지역의 황무지를 개척한 땅은 오로지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국인과 노국인은 우리 국민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sup>9)</sup>고 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과 청국인의 통계는 〈표 2〉와 같다.<sup>10)</sup> 이를 보면 조선인이 청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7) 중앙대학교 [11], 신기석 [5] p. 48.

8) 신기석 [5] p. 48.

9) 金魯奎 [2] p. 101.

10) 東洋拓殖株式會社 [16] p. 24.

## 5. 청국의 일방적 처리

청의 강희제(康熙帝)는 그 조상이 백두산에서 왕업의 기틀을 다졌다고 추측하고, “오라(烏喇, 즉 吉林)의 소속은 남으로 장백산에 이르는 1,300여 리까지이며, 그 남은 조선 땅이고, 동남쪽으로 토문강(土門江)에 이르는 700리는 조선경계이고, 닝구타(寧古塔) 장군의 소속은 남으로 장백산에 이르는 720리는 조선경계, 남으로 장백산에 이르는 600여 리는 조선계가 된다.”고 일방적으로 확정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토문강은 두만강을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두만강 북쪽과 서쪽을 청국의 영토라고 억측하게 되었다.

이것은 과거 전통적으로 정해진 국경선(봉황선 동편을 지나는 책문성과 흑산산맥 지대로 이어진 선)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그뿐만 아니라 완충·무인지대로 한 간도 지역을 청국영토로 처리하려는 처사인 것이다.<sup>11)</sup>

강희제는 이어 1677년에 무목눌(武木訥)에게, 1684년에 늑출(勒出)에게, 그리고 1711년에 목극등(穆克登, 烏喇總管)에게 지시하여 백두산 주변을 답사시켰다. 이 사람들의 일부는 백두산까지 올라 현지답사를 하였으나 일부는 백두산까지 오르지도 못하였다.<sup>12)</sup>

청은 1712년에 조선에 통첩을 보내어 국경을 확정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청국은 이미 백두산을 청국령으로 하고 두만강을 국경으로 한다는 대전제 아래 취한 처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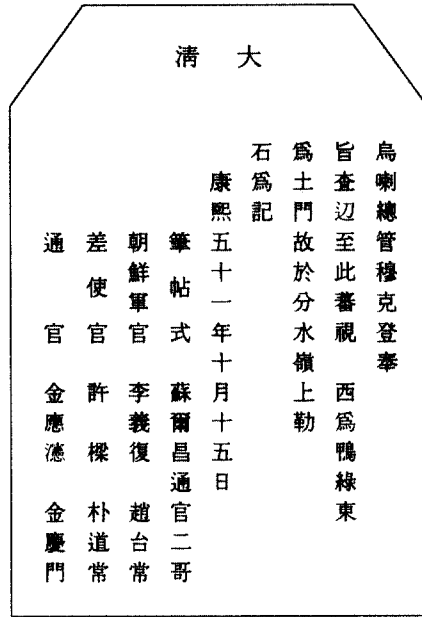
이에 조선은 참판 박권(參判 朴權)을 접반사로 임명하고 함경감사 이선부(李善溥)와 함께 청국직사 목극등을 영접하여 국경확정 업무에 종사케 하였다.

## 6. 백두산정계비 설립

조선과 청의 경계획정관계관이 국경 책정을 위해 1712년 4월 7일에 무산(茂

11) 國會圖書館 編 [1] p. 262.

12) 陸英額 [10].



山)에서 상봉하였다. 무산에서 백두산 정상으로 오르는데 목극등은 “조선 대표는 나이가 많다.”<sup>13)</sup>는 점과 “백두산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동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박권과 이선부는 따돌리고 하위직인 군관·통역관 및 차사관만 동행케 하여 백두산으로 향하였다.

5월 11일에 백두산에 오른 목극등은 백두산을 청국영토로 한다는 전제 아래 백두산 천지에서 동남쪽으로 능선(분수령)을 타고 3~4리 정도 내려와서 분수령을 중심으로 한 좌·우(서쪽과 동쪽)로 흐르는 두 물줄기를 발견하여 이 곳을 양국의 국경지점으로 정하려 하였다. 즉,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한 서쪽 물줄기는 압록강이고, 동쪽 물줄기는 두만강으로 생각하였다.

이 곳에 비석을 세우기로 일단 작성한 청국의 목극등은 서쪽 압록강측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쪽 강줄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현지 답사를 시켰다. 5월 12일에 목극등은 동쪽 토문강이 어느 정도 흐르다가 강이 없어지고 물은 지중으로 스며들었다가 다시 어느 정도 내려가서 강과 물이 생겨 동쪽

13) 박권의 나이는 이때 54세였다.



으로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극등은 동쪽 토문강의 흐름이 분명하지 않음을 알고, 그는 길 안내자로 데리고 갔던 김애순(金愛順)<sup>14)</sup>과 조선측 실무자인 김경현과 조대상으로 하여금 그 물줄기를 타고 내려 가서 조사케 하였다. 이들은 60여 리나 더 내려가 일몰과 함께 돌아와서 목극등에게 물줄기는 동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래서 목극등은 5월 15일에 능선의 이 지점에 국경비를 세웠다. 그 비석문에는 “이곳에서 동쪽으로는 토문강(土門江)으로써 국경으로 하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으로써 국경으로 한다.”고 쓰여 있다. 그 비석문의 원문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다.

비석을 세우고 하산한 목극등은 무산(茂山)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측 접반사 박권·이선부와 다시 만났다. 여기서 양국 대표 사이에서 국경으로 정한 강(박권은 실제로 현장에 가보지 않았으나 김용현과 조대상의 보고와 원주민으로서 이 지역에 밝은 元益成의 설명을 듣고 국경으로 정한 이 강이 두만강의 상류인 홍단수(紅丹水 또는 紅湍水)인줄 알고 있었다)은 국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목극등은 실지 답사한 결과 이 토문강이 국경이 되는 것은 지형상 정확하다고 우겼다.

토문강이 흐르다가 끊겼다가 다시 흐르는 등 단속(斷續)이 있었는데 물이 끊어진 곳은 국경으로서 표시하기 위하여 돌이 있는 것은 돌무더기(石墩)를 쌓고, 돌이 없는 곳은 나무말목으로 목책(木柵)을 치고, 돌도 나무도 없는 곳은 흙무더기(土堆)를 쌓기로 양측은 합의를 보았다.<sup>15)</sup> 그리고 이 공사는 조선측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목극등은 조선측 대표에게 “내가 과연 물줄기를 잘못 정하였다면 조선국왕이 강희제에게 청하여 다시 심사함이 좋다.”고 하면서 이 국경비를 기정사실로 결정하고<sup>16)</sup> 양국 대표는 각자 자기 정부에 보고하였다.

14) 김애순은 백두산 주변의 채삼자로서 이 지역의 지리에 능통한 조선사람이나 목극등은 이를 길잡이로 채용하였다.

15) 英祖實錄 卷 [7], 國會圖書館 編 [1] pp. 271~272.

16) 英祖實錄 卷 [6], 篠田治策 [17] pp. 112~113.

## 7. 석돈·목책·토퇴 공사

조선은 곧 토문강의 단속(斷續)이 있는 곳 중 강도 물도 없는 지점에서 다시 강과 물이 흐르는 곳 사이에 직선으로 석돈·목책 및 토퇴 공사를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공사중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즉, 이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한 상류임이 확인된 것이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홍치중(洪致中)의 보고문에 의하여 정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즉, 이 보고문은 목극등이 정한 강인 토문강은 두만강으로 들어가지 않고 북류하여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감이 공사중에 발견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 보고를 받은 숙종은 즉시 중신회의를 열어 이에 따른 문제를 숙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영의정 이유연(李濡堧)은 “청국대표 목극등이 정한 강줄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공사현장 감독자들은 감사나 평사에게 보고도 아니하고 그대로 공사를 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감독자들을 불러 문책하고 감사도 책임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형조판서 박권은 “목극등이 정한 물줄기가 북류했다 하더라도 이미 목차(穆差, 청 황제의 사신)가 스스로 정한 바이므로 이를 국경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하여 의견이 맞섰다.

이에 관하여 논의를 거듭한 끝에 중신회의는 공사 감독자인 허량(許樑)과 박도상(朴道常) 등을 소환하여 실황을 청취하였다. 공사 감독자들의 설명은 “비를 세운 곳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 내려가다 물과 개울이 없는 25리는 돌무더기와 말목올타리를 설치하고, 그 아래 다시 물이 흐르는 5리와 물이 마른 강 30여 리는 산이 높고 물이 깊어 강 흐름이 분명한 고로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고 또 그 아래 물이 솟아 흐르는 곳에 이르는 40여 리는 모두 나무 올타리를 하고, 그 사이 5~6리는 나무도 돌도 없고 오직 흙이 단단하므로 흙무더기를 모아 놓았다.”고 하였다.

이 설명을 들은 중신회의는 결국 이 공사는 목극등이 정한 그대로 함이 좋다고 결론을 내고 조선과 청의 국경은 두만강으로 연결된 강이 아닌, 비문과 일

치하는 토문강(실제로 이 강은 이 지방 사람들이 토문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강은 송화강의 상류이다)으로 하였다.<sup>17)</sup>

## 8. 국경문제의 야기

조선과 청 양국은 1712년에 백두산에 국경비를 세운 이후에도 간도 지역을 봉금지대로 유지하면서 민간인 출입을 엄중히 다스렸다.<sup>18)</sup>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은 살기 위하여 신 개척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들어갔다.

1860년(高宗 7)에 청국의 길림 장군은 조선의 경원·회녕부사에게 제의하기를, 양국이 관리를 파견하여 간도 지방을 합동 조사하여 범월자(犯越者)들을 소환하기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때만 해도 조선인의 간도 유입이 비공식화이지만 보편화되었다.

청국은 1867년에 일방적으로 간도 지역의 봉금지책을 버리고 청국인의 유입을 허락하였다. 1881년에 청은 길림성 남부의 봉금 지역을 개방하고 이어 오대 증 등의 건의로 토문강 동쪽일대에 개간을 허가하고 여러 행정기관을 신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국은 조선인이 간도 지역으로 들어와서 농사짓고 있는 무리가 이미 다수이며 2,000상(晌, 1晌은 4~7단보)의 토지를 개간하고 이를 함경관찰사로부터 지권(地券)을 받았고, 함경관찰사는 이 지역의 지적부를 작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청은 간도에 들어온 조선인을 조선으로 철수시키려 하였으나 그 수가 너무 많아 도저히 이를 실행할 수 없었다. 이에 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간도에 사는 사람은 국적을 막론하고 모두 청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하고, ② 이에 불응하는 조선인에게는 조선 정부로 하여금 소환해 가도록 압력을 가하기로 하였

17) 英組實錄廳 [8].

18) 이 지방으로 들어간 민간인을 발견하면 상대방 관청에 통고하여 이를 잡아가도록 조치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정부는 민간인 잡임을 허술하게 다룬 지방관을 문책하여 감봉·좌천·파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봉금지책 위반자에 관한 사례는 肅宗實錄·景宗實錄·英組實錄·通文館志·同文彙考 등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다. 이어 청은 조선에 이러한 취지대로 간도에 사는 조선인의 소환을 요구하였다.

이 요청을 받은 조선은 “간도에 건너가서 경작하는 조선인을 청국 국민으로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조선이 조사를 엄중히 할 예정이다.”라고 회답하였다. 이 취지는, 그 당시 청이 조선을 종속국이라고 하여 내정간섭이 심한 때였으므로 우선 청의 간도문제에 관한 행위를 피하면서 문제를 유리하게 처리하려는 작전임을 알 수 있다.

### 9. 간도문제의 정치 쟁점화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청이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청의 이에 관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간도 주민들은 백두산, 백두산정계비, 토문강 그리고 석돈과 목책들을 답사한 후 그 결과를 종성부사 이정래(李正來)에게 호소하였다.

이 호소문은 “... 청은 2년 전에 돈화현을 설치하였지만은 국경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임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청의 정부 공문과 지방 길림성의 공문을 참고하건대 토문강으로서 경계로 한다고 하였고, 또 개간지가 토문강 이북과 이서에 있다고 하였으나 일찍이 두만강 이북이라고 언급한 바 없다. 토문은, 즉 분수령 위의 정계비를 설치한 곳에 있고, 두만은 조선의 영토 내에 있는 강이므로 청이 알 바가 아니다. ... 이제 두만강 이북을 가리켜 토문 이북이라고 하는 것은 토문 이남에 들어와 사는 청의 유민이 조선인의 춘경추귀(春耕秋歸)하는 것을 보고 강을 건너는 것이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여 돈화현에 무고함으로써 우리 백성을 전부 돌려보내지는데 있다. 청컨대 이 뜻을 돈화현에 조회하여 곧 경계를 조사하여 사태를 바르게 수습해 달라.”는 것이었다.

청의 돈화현 기사와 조선의 종성부사 사이에서 간도 귀속문제와 주민 소환문제가 현안으로 되어 있고 또한 주민들의 간도 영유권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문제가 일어나자, 조선 정부는 1883년에 어윤중(魚允中)을 서북경략사로 임명하여 사실의 명백한 조사와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어윤중은 종성인 김우식과 오원정을 시켜 두 차례에 걸쳐 백두산정계비와 그 주변을 답사케 하였다. 이들은 이를 답사한 결과 탐계노정기(探界路程記)와 탐계일지(探界日誌)를 써서 보고하였다.

이 보고의 요지는, 토문강은 송화강의 상류로서 흑룡강으로 흘러들어가고, 두만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조사·보고를 받은 어윤중은 고종에게 보고하기를, ① 토문강 이하의 간도 지역이 조선영토임과 ② 간도 지역의 완충·무인지대, 즉 봉금지대를 청과 같이(청은 1867년에 이미 해제) 해제하여 이민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것, ③ 조선은 청에 토문강 이하가 조선영토임을 정식으로 통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토문강 이하의 간도 지역이 조선영토임을 청에 통고하면서, “... 우리 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 땅에 살게 함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동시에 간도에 사는 조선인의 소환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조선정부는 청 정부에 대하여 경계가 분명치 못하면 양국 국민의 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니 한 차례 국경을 조사하여 정확히 결정지을 것을 요구하고, 국경책정을 위한 대표의 파견을 요구하였다.<sup>19)</sup>

## 10. 울유 감계담판(1885)

조선의 요구에 따라 청은 이에 호응하여 양국간에는 국경을 확정하려는 회담과 현지답사가 이루어졌다.

회담은 1885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조선 대표는 이중하(李重夏, 安邊府使)이고 청 대표는 덕옥(德玉)·가원계(賈元桂) 그리고 진영(秦瑛)이었다.

첫 회담은 회녕에서 개최되었고, 이어서 무산·삼하강구·제2차 무산회담 등 네 차례 열렸으나 양국의 근본적인 주장점이 달랐으므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회담 초부터 양국의 기본 입장이 현저하게 달랐다. 즉, 조선은 백두산정계비

19) 國會圖書館 編 [1] pp. 276~277, 314, 篠田治策 [17] pp. 133~142.

의 토문강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청은 두만강이 국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히 양국 대표의 전략도 다르게 나타났다. 청 대표는 ① 두만강 감계의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 ② 두만강이 국경이 분명하므로 회담장소인 무산에서 두만강 상류로 답사해 올라가면서 상류지방의 여러 강줄기 중 주류를 찾자는 것, ③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백두산정계비를 조사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었다.

조선 대표는 ① 백두산정계비에 명시한 토문강 감계의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 ② 정계비를 중심으로 하여 토문강 줄기를 따라 내려가면서 석돈·목책·토퇴 등을 답사하자는 것, ③ 따라서 청 대표를 두만강 답사를 그만 두게 하고 정계비 있는 곳으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상반된 주장이 맞서게 되어 청 대표는 조선 대표에게 1882년의 임오군란과 1884년의 갑신정변 당시에 청이 조선을 군사적·외교적으로 베푼 은혜를 동원하였고, 또한 청 대표는 종주국을 내세우면서 청국 황제의 지시도 조선 대표는 무시한다고 조선 대표에게 협박하였다.

결국 양국 대표는 두만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사하였다. 10월 13일에 드디어 두만강의 상류 세 갈래 지점에 이르렀다. 여기서 청국 대표 진영·가원계와 조선 대표 이중하는 맨 북쪽 강줄기인 홍토수(紅土水)를 따라 올라가고, 청 대표 덕옥과 조선 수행원 조창식은 중간 줄기인 홍단수(紅丹水 또는 紅湍水)를 따라 올라가고, 청 지도 작성자 염영과 조선 수행원 오원정은 맨 남쪽의 강줄기인 석을수(石乙水 또는 西豆水)를 답사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 대표는 ① 백두산정계비에 관한 기록은 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② 1712년에 정계비를 설치할 때 청의 목극등의 착오라는 것, ③ 정계비를 설치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실을 뒷사람들이 만들어 낸 허위주장이라는 것, ④ 청국 개국이래 청은 외국과의 왕래문서에 만주 문자를 사용하였는데 이 비석에는 만주 문자가 없다는 것, ⑤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지 오래 되었는데 글자에 흠이 하나도 없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 등을 열거하면서 백두산정계비의 진가를 무시하려 하였다.

이에 조선 대표 이중하는 이를 일일이 반박하였다. 그는 ①에 관하여, 목극등이 비석을 세운 뒤에 청국 정부에 보고한 서류가 남아 있으므로 이에 관한 기

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②에 관해서는 당년의 착오란 것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당시에 토문강 물줄기를 따라 부하를 시켜 답사까지 마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③에 관해서는 당시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뒷사람의 위작설도 말이 안 되며, ④에 관해서는 청국 개국이래 조선과의 왕복문서에서는 만주 문자가 한 번도 없었으며, 또 1639년에 청 태종 송덕비를 광주 삼전도에 세웠으나 여기에도 만주 문자는 없으니 백두산정계비에 만주 문자가 없는 것은 당연하며, 그리고 ⑤ 백두산정계비가 오래 되었음에도 새겨진 문자가 흠이 없이 너무나 깨끗하다는 것은 의심을 하기 위한 의심이며 170년밖에 안 된 비석인데 어찌 글자에 흠이 생겼겠는가 하고 반박하였다.<sup>20)</sup>

이상과 같이 청 대표는 백두산정계비의 존재를 무시하려 하였고 조선 대표는 이 자세와 논리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하였다. 그리고 조선 대표는 두만강 국경을 반대하고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을 국경으로 주장하였다.

을유 감계담판은 이상과 같은 경위의 의견 차이로 아무런 성과 없이 유산되었다.

## 11. 정해 감계담판 (1887)

청은 1887년에 조선에 국경회담을 다시 제안하면서 대표로 덕옥·진영과 방량(方郎)을 임명하였다. 조선은 이번에도 이증하를 대표로 임명하였다.

양측 대표는 1887년 4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2개월 반(윤 4월 포함)에 걸쳐 두만강을 따라 백두산까지 답사하면서 회녕회담·장파회담·제2차 회녕회담 등을 개최하면서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내었다.

이 회담의 특징은 청은 ① 조선에 종주권을 강화하면서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였다는 점, ② 무산 이하의 두만강은 기정의 국경으로 보고 그 상류 중 본류를 찾는데 둔 점이다. 조선은 ① 청의 강압을 이겨내기 어려워 토문강을 포기하고 두문강 홍토수(두만강 상류 세 가닥 중 가장 북쪽에 있는 강)를 국경으로 제시하면서, ② 이번 회담도 결과 없이 유산시키려 한 점이다.

20) 國會圖書館 編 [1] p. 238, 王養生 [13] p. 118, 127.

이 회담에서도 을유 감계담판 때와 비슷하나 특이한 점은 청 대표가 조선 대표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한 점과 조선 대표가 토문강을 포기하고 두만강 홍토수를 국경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첫째, 청 대표가 조선 대표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한 점이다. 즉, 청 대표는 조선 대표에게 청이 수차례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보호해 준 것, 이중하 대표가 사대(事大)의 도리에 어긋난 주장을 한다는 것, 이중하 대표가 청국 황제에게 사군(宗속국 신하로서 마땅히 황제를 섬겨야 하는 도리)하는 태도가 나쁘다는 것, 국경조사에 임하여 조선 대표는 권모술수와 임기응변을 다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위협하였다. 그리고 홍단수(紅丹水) 답사중 조선측 4명에게 청측 40명이 이 홍단수로 정하지 않으면 사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조선 수행원 지창한에게는 제도(製圖) 중에 청측 주장대로 지도를 그리지 않는다고 하여 그의 왼손 엄지에 부상까지 입혔다<sup>21)</sup>는 것 등이다.

둘째, 이중하 조선 대표의 두만강 홍토수 제안이다.

을유 감계담판에서 이중하 대표는 청 대표에게 “내 목은 잘라 갈 수 있어도 우리 땅은 촌토도 빼앗길 수 없다.”고 하면서 토문강 국경을 주장하였는데 이번 회담에서 토문강 주장을 버리고 두만강 홍토수를 국경으로 제시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 ① 청 대표가 국가의 은덕을 팔면서 굴복을 강요하고 종주국으로서의 강압한 것을 견디어 내지 못한 점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본 논문에서도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한다.
- ② 이중하 조선 대표가 청정부 밀령을 사전에 입수하여 청국의 정부지침을 사전에 알고 있는 점이다. 청 대표가 회담 도중에 야영 천막에서 정부의 지령을 검토했다가 낮잠이 든 사이에 조선측 수행원이 이 밀령을 발견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중하 대표에게 고지하였던 것이다. 입수한 이 정부의 밀령은 이번 회담에서 청은 두만강 홍단수를 고수하라는 것이었다.

21) 國會圖書館 編 [1] p. 89, 378~379.



그래서 이중하 대표는 홍단수보다 북쪽에 있는 홍토수를 조선이 주장하여도 청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홍단수를 제시하여도 청 대표는 이를 거절하고 회담은 유산될 것도 이중하 대표는 염두에 두고 있었다.

결국 이 회담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 이후 청의 이홍장(북양대신으로서 조선과의 외교·군사문제를 다루던 청의 고위직 정치인)은 1888년 1월 12일에 국경담판을 다시 하여 국경을 확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5월 16일에 서울 주재의 청국공사 원세개(袁世凱)에게 1887년의 정해감계담판에서 조선 대표 이중하가 주장한 홍단수 국경제안은 정부와 아무런 상관없는, 즉 이중하 개인의 의견이므로 이를 무효임을 밝힌다고 통고하였다. 그리고 이중하 대표가 정부에 건의한 대로 정부도 양국회담중의 식량과 기타 비용을 조선측이 부담했으나 이 부담이 너무 크고, 청 대표의 조선 대표에 대한 위협이 너무 크므로 이 회담은 서두르지 않기로 하였다.<sup>22)</sup>

## 12. 간도에서의 주권 충돌

조선이 공식문서에 의하여 정해(1887) 국경회담을 무효로 선언하면서, 토문강을 종전처럼 국경으로 주장하자 청은 정해 국경회담에서 그들이 주장한 두만강 홍단수가 국경으로 확정된 것으로 기정 사실화하려 하였다.

이렇게 되자 영토분쟁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조선과 청 양국은 간도에 관하여 각각 주권행사를 취하게 되었다.

청은 1880년에 간도에 행정기관인 초간국(招墾局)을 두고 1894년에 행정구역을 세분하였다. 즉, 청은 간도를 4대보(大堡)로 나누어 39사(社)를 두고 사에 향약사장(鄉約社長)을 설치하였다. 또 1900년에 국자가(局子街)에 연길청을 신설하고 태랍자(太拉子)에 분방경력청을 두어 지방행정사무를 개시하였다. 1902년에는 자타소에 무민독려사무를 두면서 군대를 주둔시켰다.<sup>23)</sup>

22) 國會圖書館 編 [1] pp. 114, 237, 562.

23) 國會圖書館 編 [1] pp. 380, 篠田治策 [17] pp. 230~231.

청은 또한 간도에 조선인 사주(社主)에게 청 국적을 취득케 하고, 복장과 두발을 청국식으로 고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조선인에게는 토지를 몰수하기도 하고 두만강 이남으로 추방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은 청이 종주국으로서의 강압으로 영토에 관한 주장을 조심히 다루었으나 1895년에 청·일 전쟁의 결과 청이 패배하여 조선에서 그 세력이 물러나자 간도 영유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조선이 독립된 제국(帝國)이 된 1895년(光武元年)에 함경도 관찰사 조준우와 1899년에 조선인 오삼갑이 각각 간도 영유권에 관하여 정부에 상신하였다.

1900년에 고종의 지시로 내부대신 이근하(李乾夏)는 경원부사 박일헌을 사계위원(査界委員)으로 임명하여 현지답사를 시켰다. 답사를 마친 박일헌은 “... 토문강 상류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하천이 본래 국경선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국경 때문에 청과의 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국민의 거주를 금지하고 그 넓은 지역(봉금 지역)을 비우니 청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영토를 인정하여 천여 리의 땅을 러시아에 할양했다. ... 이 기회에 현행의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공평히 국경을 관장해야 할 것이다.”<sup>24)</sup>고 보고하였다.

조선은 또 1901년에 회녕에 변계경무서를 설치하고 무산과 증성에 지서를 두어 간도조선인의 보호와 소송사무를 관장하였다. 이어서 참정대신과 내무대신 및 경무대신은 각각 “변계경무서를 설치하여 간도조선인의 사법과 행정을 맡게 하니 모두 이의 지휘를 받으면서 생업에 종사하라.”고 고시하였다. 조선은 간도를 회녕간도(會寧間島)·증성간도(鐘城間島)·무산간도(茂山間島) 및 은성간도(隱城間島)로 행정구역을 정하였다.

1902년에 조선은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시찰사로 임명하였다. 이범윤은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의 간도 지방에 사는 조선인을 위무하고 호구와 인구를 조사하여 명부를 작성하였다. 그는 1903년 5월에 조선인 호적부 52책을 편제하고 부동산 3,647,496圓 34錢을 등록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참정대신 김규홍(金奎弘)은 간도가 분명히 조선 땅임을 강조

24) 楊昭全·孫玉梅 [12] pp. 412~413.

하고 이 곳에 세제적용·관리주둔·지방행정제도 확립 등을 고종에게 건의하였다. 이어 조선은 1903년 10월에 간도시찰사인 이범윤을 간도관리사에 임명하고 많은 권한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아울러 조선은 이 사실을 청에 통고하였다.<sup>25)</sup>

이상과 같이 조선과 청은 간도에 영토선언과 동시에 주권행사를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이었다. 이 충돌 사건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sup>26)</sup>

1903년 2월에 조선시찰사 이범윤이 경무관들을 인솔하여 화룡곡의 안원보 지역에서 청 관헌들과 충돌이 일어났다. 동년 5월에 조선경무관 김 모는 화룡곡의 인구를 조사하고 세금을 증수하다가 청 관헌과 충돌하였다.

동년 10월 19일에 조선인 손영호는 상등병 박정순 등 10여 명의 병사와 수십 명의 조선인을 인솔하여 화룡곡의 순화사 지방에서 청인 오배호·조봉화·숙언명 등 수십 명과 충돌하였으며 이들을 포로로 잡아왔다. 동년 10월 24일에 조선인 12명이 덕화사에서 청 병사들과 총격사건이 일어났다.

동년 11월 1일에 조선 병사들과 오도구 지방에서 청병 20여 명과 충돌하였다. 또 동년 11월 3일에 이범윤 간도관리사가 육성한 조선포수대들은 승화사 지방에서 청 부대와 충돌했으며 이 날 밤에는 조선 포수대와 청의 부산(富山)이 이끄는 부대간에 대충돌이 일어났다.

11월 5일에 조선의 대부대가 덕화사 지역에서 청 대부대와 충돌하였다. 조선의 한 부대는 장모덕 서부에서 청병과 충돌하고 또 다른 일부대는 장덕모 청 기지를 포위하여 도망하는 청병을 삼도구와 사도구까지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11월 7일에 다수의 조선병사가 승화사·선화사·상화사에서 청병과 충돌하여 살상과 가옥 소각 등의 사건이 일어났다.<sup>27)</sup>

또 1904년 2월 15일부터 23일에 걸쳐 양국간에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다. 즉, 조선관리인 김극렬과 성문석이 각각 군대 100명을 인솔한 군대와 이범윤이 직접 인솔한 군대가 청 관리와 청인의 학정과 탄압을 견디다 못해 덕화사·장화사·산계사 등지를 점령하고 장대고벽 지방에서는 양국 군병의 대접전까지 있

25) 이 때 압록강 건너편의 간도에도 조선과 청의 충돌이 많았으나 이 논문은 두만강 건너편의 간도 지역만을 연구범위로 하였고 때문에 압록강 건너편의 충돌사건은 제외하였다.

26) 楊昭奎·孫玉梅 [12] pp. 417~423.

27) 國會圖書館 編 [1] pp. 19, 23, 28.

었다.<sup>28)</sup>

양국간의 관청·군대 및 민간인 사이에서 이상과 같은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서울 주재 청국공사 허대신은 1904년 3월 16일에 “양국 국경은 오래도록 확정하지 못하고 현안으로 남아있다. 현재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있게 되니 곧 양국은 대표를 파견하여 국경을 확정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조선 정부에 보냈다.

이에 대하여 조선 정부는 내부대신 이용태와 외부대신 이하영의 명의로 1904년 5월 14일에 회답을 보냈다. 이 회답에는 “간도는 백두산 이남 두만강 이북에 있다. 여러 차례 답사를 하였으나 몇백 년 동안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했다. … 양국이 담판하여 우리 영토를 회복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함은 진실로 급무로 한다.”<sup>29)</sup>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러·일 전쟁(동년 2월 8일에 발발)이 발발하고 러시아와 일본, 조선의 정국이 전쟁상태이니 간도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종용을 하게 되었고, 조선과 청 지방관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임시로 사태를 수습하고 간도 영유권 문제는 뒤로 미루었다.

### 13.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반도에서 청의 세력을 구축했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반도에서 러시아를 또한 구축하였다. 조선반도에서 배타적 특권을 누리게 된 일본은 1905년 11월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조선은 일본에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보호를 의뢰하였다.

이 의뢰를 받은 일본은 지금까지 조선과 청 사이에서 분쟁을 계속해 온 간도 귀속문제에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본 결과 간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게 되었다. 일본은 간도에 조선총독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또한 간도를 북도소·회녕간

28) 國會圖書館 編 [1] pp. 356, 383.

29) 王堇生 [13] p. 133.

도·종성간도 및 무산간도의 4구로 나누고 거기에 도사장 1명씩 두고 다시 이를 41사(社)로 나누어 각 사에 사장 1명씩을 두며, 이를 290촌으로 나누어 각 촌에 촌장 1명씩을 두었다. 또 일본은 중요지점에 헌병분견소를 설치하고 이에 조선경찰관을 배치시켰으며 신흥평·국자가·두도구·호천포·우적동·조양천·복사평 등 14개소에 분견소를 두었다.<sup>30)</sup>

청은 이에 대하여 일본에 간도에서의 철병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07년 9월 2일에 “... 간도는 조선과 청 사이에서 분쟁지였고 조선은 두만강으로서 국경으로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조선이 일본에 간도 조선인의 보호를 의뢰하였으므로 간도에 일본 파출소를 설치하고 제등계차랑(齋藤季次郎)을 소장으로 파견하였으니 오해없기를 바란다.”고 통고하였다.<sup>31)</sup>

이어서 일본은 간도가 조선영토라는 것을 고증하여 13항으로 된 공문을 청에 발송하였다. 이 공문을 받은 청은 이 13개항에 관하여 일일이 반박하는 공문을 일본에 보냈다.

일본은 다시 청의 반박문에 관한 재반박문을 청에 보냈고, 청은 또 다시 일본에 반박문을 보냈다.

이상과 같이 일본과 청 사이에서 간도문제를 두고 반박문을 교환하면서 영토 분쟁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조선의 입장에 서서 간도는 조선영토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던 일본이 조선반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침략으로 정책을 바꾼 이후에 간도에 관한 정책이 달라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대륙으로 침략하여 만주 전체 또는 중국 본토에의 침략을 한다면 간도는 저절로 일본 영향권 속에 들어오는 것이므로 간도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1909년 2월 6일에 청국에 대하여 동삼성 6안(東三省六案)을 제시하여 만주(중국측은 東三省이라 한다) 침략의 발을 내딛었다. 동삼성 6안이란 ① 만주철도의 병행선인 신법(新民屯~法庫)철도 부지권문제, ② 대석교~영구(大石橋~營口) 간의 지선문제, ③ 경봉(新京~奉天)철도를 봉천성 밑까지

30) 王芸生 [13] p. 135, 篠田治策 [17] pp. 222~234.

31) 國會圖書館 編 [1] pp. 248~249.

연장하는 문제, ④ 무순·연대 탄광의 채굴권문제, ⑤ 안봉선(安東~奉天) 연안의 광무문제 그리고 ⑥ 간도귀속문제 등이다.

1909년 2월 10일에 일본공사 이집원언길(伊集院彦吉)과 청의 외부시랑 양돈언(梁敦彥) 사이에 이 동삼성 6안을 놓고 회담을 개시하였다. 양측 대표는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 일본이 ⑥번의 간도 영유권 문제를 청에 넘겨주는 대신 청은 나머지 다섯 가지 안건은 모두 일본 주장대로 넘겨주게 되었다.

1909년 9월 9일에 양 대표는 7개 조항으로 된 두만강 조·중 계무조관(일명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sup>32)</sup> 이 내용을 보면 1조에 “일·청 양국정부는 두만강(圖們江—곧 豆滿江)을 청·조선의 국경으로 하며, 강원 지방에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서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국경은 조선이 주장한 토문강(土門江)이 아니며, 또 두만강 상류의 세 지류 중에서 백두산정계비와 가장 거리가 멀고 제일 남쪽의 석을수를 국경으로 정한 셈이다.

두만강 상류의 세 지류 중 가장 북쪽에 있는 홍토수는 정계비와의 거리가 20리이고 석을수는 그 거리가 100리나 되는 곳이다.

이것은 조선영토를 처리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일본이 만주에 관한 다섯 가지 이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조선의 영토인 간도를 일본 자신의 편의대로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II. 결 언

일본은 조선과 맺은 제2차 의정서, 즉 을사보호조약을 근거로 하여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청에 넘겼으나 이는 불법행위이며 근원적으로 무효이다. 그 까닭은 조선이 제2차 의정서 이후 간도에 있는 조선인의 보호를 의뢰

32) 盧啓鉉 [4] pp. 138~140.

하였을 뿐이고, 간도를 양도한다거나 매도한다거나 또는 상환하라는 등 아무런 권한도 일본에 위임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제2차 의정서는, 일본의 전권대사인 이등박문(伊藤博文)이 일본의 군대와 경찰의 총검을 동원하여 조선전권대사 또는 대신 개개인에게 위협을 가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협약이었다. 그러나 설사 이 의정서가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협약 어디에도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영토인 간도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곳은 없다.

이 협약 제1조에 “일본정부는 … 금후 한국(이 당시는 대한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통리 지휘할 것”이고 또한 “일본국 외교 대표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해를 보호할 것”으로 되어 있다. 단지 일본이 한국의 대외관계 업무를 통리 지휘할 뿐이고 외교주체는 역시 한국인 것이다.

그 협약 제2조에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과의 사이에 현존한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임(任)에 당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청국과 1712년에 백두산에서 정계비를 세우고 거기에 동위토문(東爲土門)이라고 새겨 두만강 아닌 토문강을 국경으로 정하였다. 이것은 완전한 조약인 것이다. 종이 위에 글자를 쓴 것은 조약이고 돌 위에 글자를 새긴 것은 조약이 아니라는 법칙은 없다. 종이 위에 썼거나 돌 위에 새겼거나 한 것은 방법의 차이이지 양국간의 합의 절차·내용·효과 등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백두산정계비도 조약이므로 제2차 의정서 2조의 적용을 받아 일본은 백두산정계비문을 고수하여야만 옳은 것인 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정계비를 무시하고 별도의 조약을 체결한 행위는 2조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 협약 제2조 후문에는 “한국 정부는 금후에 일본 정부의 중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가지는 하등의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아니함을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도 한국 외교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이고 외교행위는 단지 일본의 중개에 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의 주체가 역시 한국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영토인 간도를 한국이 아닌 일본이 조약체결 당사자 노릇을 하면서 더구나 간도를 청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불법행위인 것이며 따라서 이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이다.

간도 영유권 문제는 1904년까지는 분명히 조선과 청 사이의 현안이었고 서로

양보 없는 충돌을 하면서 주권 다툼을 해온 지역이다. 이러한 분쟁지역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일본이 청과 해결지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행위인 것이다. 보기를 들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 지역이 조어도(또는 생가꾸)를 한국과 일본이 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이 이를 일본의 소속으로 한다고 규정한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문제에 관하여 중국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겠는가? 또한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북방 4도에 관하여 한국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하여 북방 4도는 러시아의 영토라고 규정하였다면 일본은 이에 굴종하겠는가?

그러므로 조선과 청 사이에서의 국경현안문제로 분쟁을 하던 지역이면 조선과 청(또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교섭 또는 협약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잃든지 없든지 또한 양보하든지 양보받든지 하여 당사국 사이에서 직접 해결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조선과 청의 국가계승권을 갖고 있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진지하게 간도 영유권 문제에 관하여 역사적·경제적·사회적·지리적·정치적 또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종합 검토한 후에 직접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 ▣ 참고 문헌 ▣

1. 國會圖書館 編, 『日本外務省 및 陸海空軍省文書 第1輯, 間島領有權關係 拔萃文書』, 1975, pp. 336~338.
2. 金魯奎, 『北興要選 下, 探界公文攷』, 1880, p. 101.
3. 金指南 編, 『通文館志 卷10, 紀年續編 1720』, 英宗 7年 辛亥.
4. 盧啓鉉, 『조선의 영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7, pp. 138~140.
5. 신기석, 간도귀속문제, p. 48.
6. 英祖實錄廳, 『肅宗實錄』, 38年 5월.
7. \_\_\_\_\_, 『肅宗實錄』, 38年 壬辰 6月 3日 己卯.
8. \_\_\_\_\_, 『肅宗實錄』, 卷52, 38年 12月 7日.
9. \_\_\_\_\_, 『肅宗實錄』, 1728, 11年 11月 23日, 12月 1日.



10. 陸英額, 『吉林外記 卷2, 疆域形勝 條』.
11. 중앙대학교, 『논문집』, 제17집, 1961.
12. 楊昭全·孫玉梅, 『中朝辺界史』, 1993, pp. 412~413, 417~423.
13. 王芸生, 『六十年來的中國與日本』, 第5권, 1914, p. 118, 127, 133, 135.
14. 欽定盛京通志, 卷8, 綸音1, 論兵部, 乾隆 11年 7月 21日.
15. 稻葉岩吉, 『增訂滿洲發達史』, 1937, 東京, p. 319.
16. 東洋拓殖株式會社, 『間島事情』, 1931, p. 24, 84.
17.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樂浪書院, 1937, p. 22.